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21
----------	------

제출년월일 : 2010.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가. 2007. 11. 1일에 발의한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은 효력이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결되어(2007추158호, 2009. 12. 24.) 이전 조례로 환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업종 등 삭제(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조정함(안 제7조)
다. 협의회 기능 중 외국인 투자자의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삭제
(안 제8조제3호)

3. 참고자료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조부터 제6조까지)을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를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시 본청(경제자유구역외 업무)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 업무)”을 “간사 1인을 두되, 시 본청”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협의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2. 시 소속 실·국장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다만, 해당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3.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그 밖에 경제계 및 금융계 등의 인사

제8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3조(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의 분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u> <u>2. 경제자유구역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지원 및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라 한다)</u> <u>3.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u> 	<p><삭제></p>
<p><u>제4조(입주외국인투자기업)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과 토지매각 및 대부</u> <u>에 대하여 특례를 부여 할 수 있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여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개정 2008-8-4></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미화 1천만불 이상의 투자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u> <u>2. 미화 1천만불 이상의 투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경우</u> <ol style="list-style-type: none"> <u>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u> <u>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 휴양업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u>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p> <p>3. 미화 5백만불 이상의 투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p> <p>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 사업</p> <p>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p> <p>다.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과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에서 영위하는 물류 산업</p> <p>라.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물류 산업</p> <p>4.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로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p> <p>5. 미화 1백만불 이상의 투자로 다음 각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p> <p>가. 국내산업의 국가경쟁력강화에 필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외국인투자등에대한조세감면규정」 별표1에 계기된 제품의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동표에 계기된 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 연구경력이 있는 자를 상시 10명 이상 고용할 것</p> <p>나. 가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가 있는 자로서 3년 이상</p>	

현행	개정안
<p>다.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에 직접 관련되는 기술을 제공하거나 기술을 이용한 사업에 자본을 투자하는 경우</p> <p>제5조(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6의2 규정에 의거 외국인을 위한 학교 및 의료기관등 외국인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 2. 「의료법」 제3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 및 조산원 3. 「약사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약국 4.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5. 그 밖에 외국투자가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지식경제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p>제6조(개발사업시행자) ①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및 토지매각 또는 대부 등의 특례를 부여 받을 수 있는 외국인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획, 금융, 설계, 건축, 마케팅, 임대, 분양 등을 일괄 수행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 2.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당해 경제자유구역의 총 개발사업비가 미화 5억불 이상인 경우 	<p><삭제></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제7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투자유치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많은 공무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기타 경제계 및 금융계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 ⑥ (생략) ⑦ 협의회는 간사 2인을 두되, 간사는 시본청(경제자유구역외 업무) 및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경제자유구역 업무)의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실·과장이 된다.</p> <p>제8조 (협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2. (생략) 3.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관련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다만,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생략)</p>	<p>제7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u>위원으로 구성한다.</u></p> <p>③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협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인 2. 시 소속 실·국장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다만, 해당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3. 투자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기타 경제계 및 금융계 등의 인사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 간사 1인을 두되, <u>시 본청</u> ----- ----- ----- -----</p> <p>제8조 (협회의 기능) ----- ----- 1.2.(현행과 같음) <u><삭제></u></p> <p>4.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취사항

관계법령	<p>□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p> <p>○ 제23조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2.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p>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 소속공무원중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2.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 또는 법 별표 1 및 법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련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중에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당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중에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자 4.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는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당해 위원과 관련되는 안건이 부의된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p>④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없음”
관련자료	“해당없음”